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145974 판결 [사해행위취소를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

---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16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1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와 피고, C 등 4자녀가 있다.

다. 피고는 2017.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C은 상속인 지위에 있었는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1)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 7. 10. 이루어졌고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1.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3. 결론

소 각하

판사 김범준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2017.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늦어도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